키즈카페 창업 ·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즈카페 창업 · 운영]

『키즈카페 창업 · 운영』 콘텐츠에서는 복합 놀이제공업소인 키즈카페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키즈카페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키즈카페 창업 · 운영 1
1. 키즈카페 알아보기 4
1.1. 키즈카페의 이해 4
1.1.1. 키즈카페의 개념 4
2. 키즈카페 창업하기 6
2.1. 신고 사항 6
2.1.1. 테마파크시설 설치 신고 6
2.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8
2.1.3. 식음료 판매 신고 9
2.2. 확인 사항 11
2.2.1. 시설기준 확인 11
2.2.2. 확인검사 및 안전검사 13
2.2.3. 환경안전관리 14
2.3. 보험 가입 17
2.3.1. 의무 보험가입 등 17
3. 키즈카페 운영하기 19
3.1. 시설확인검사 및 안전교육 실시 19
3.1.1. 정기 확인검사 등 19
3.1.2. 관리주체의 안전교육 등 22
3.2. 소방안전관리 24
3.2.1. 소방시설 설치 등 24
3.3. 안전사고 발생 대처방법 25
3.3.1. 안전사고 대응 조치 25
4. 키즈카페 폐업하기 29
4.1. 키즈카페 폐업 신고 29
4.1.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29

1. 키즈카페 알아보기

1.1. 키즈카페의 이해

1.1.1. 키즈카페의 개념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키즈카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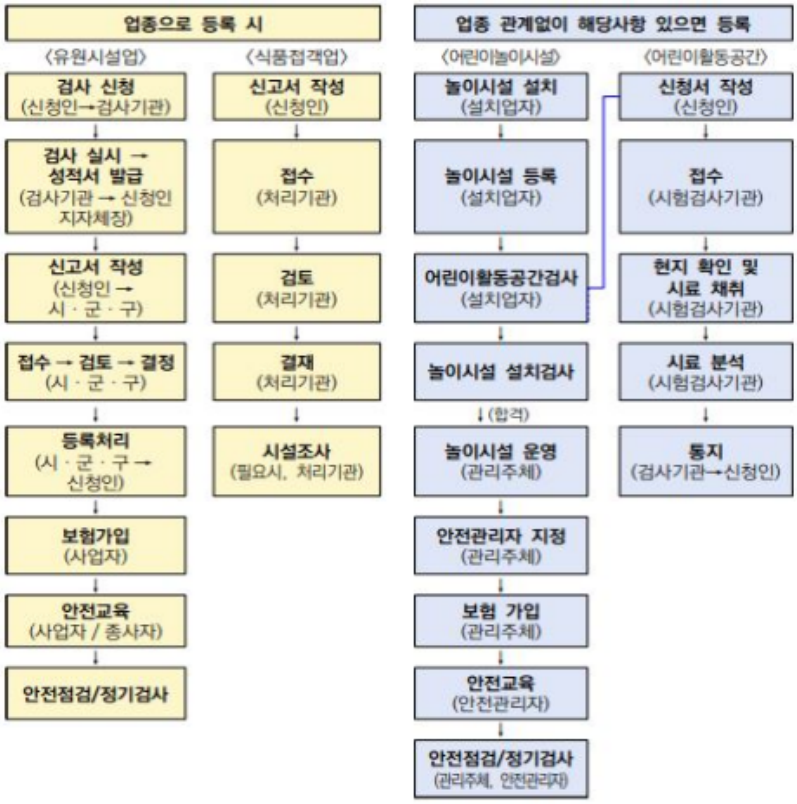
▪ "키즈카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제공하는 영업

> ※ "기타테마파크업"이란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
>
> ※ "테마파크시설"이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다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함)를 말합니다(「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제1호 참조).
>
>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참조).

키즈카페 창업절차

▪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이 기타테마파크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참조).



▹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테마파크시설이 있으면 등록해야 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합니다(『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참조).

> Q.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서 무료로 이용가능한 어린이 놀이기구 몇 가지를 매장에 두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키즈카페에 해당되나요?
>
> **A.**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식·음료 판매)이 주가 되는 형태로서,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테마파크시설,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키즈카페에서 제외됩니다.
>
> <출처: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쪽 참조>

2. 키즈카페 창업하기

2.1. 신고 사항

2.1.1. 테마파크시설 설치 신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창업하여 테마파크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

▪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타테마파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참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5.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 비상 시 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함)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타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테마파크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참조).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매뉴얼』, 51쪽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2호).

기타테마파크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변경신고

▪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함)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 위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신고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1호).

2.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2023. 10.31. 발령·시행)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 어린이놀이시설을 등록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설치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시설등록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람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참조).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위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5 참조).

>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2).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4호 참조).

> Q: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
> <출처: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13쪽>

2.1.3. 식음료 판매 신고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신고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제25조제1항제8호 참조).

신고 시 제출서류

▪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참조).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함)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Q: 키즈카페에서 완제품 음료(콜라 등),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위반 시 제재

▪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또한 식품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참조).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9호).

식품판매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참조).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위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
-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위반 시 제재

- 식품판매업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또한 키즈카페 사업자가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도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참조).
  - 키즈카페 사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7호 참조).
- 키즈카페 사업자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참조).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9호).

2.2. 확인 사항

2.2.1. 시설기준 확인

키즈카페 사업자는 테마파크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 참조).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함)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설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나목 참조)

유형	종류
주행형	•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고정형	•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관람형	• 영상모험관(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놀이형	• 붕붕뛰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 구급약품 비치

※ 키즈카페 사업자가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제3호 참조).

·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구급약품 비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2023. 10. 31. 발령·시행)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위 고시에서는 다음에 관한 어린이놀이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참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기준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시 권고사항

> ※ 권고사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놀이시설 구성, 기구별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키즈카페 사업자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
> <출처 :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2023, 23쪽 참조>

2.2.2. 확인검사 및 안전검사

테마파크시설은 안전성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검사

▪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본문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등록증 또는 키즈카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5호 참조).

>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이란 위험요소가 적은 테마파크시설로서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가목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함)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함)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참조).

안전검사기관의 확인사항

▪ 위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위반 시 제재

- 키즈카페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및 제3호의2).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설치검사 합격 표시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부착,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5 참조).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위와 같은 품질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매뉴얼』, 49쪽 참조).

>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2.2.3. 환경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와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 포함),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공간을 말합니다(「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어린이활동공간소유자나 관리자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제4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2.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제5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제6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나 소유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본문).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단서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 참조).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7항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키즈카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 기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제10항 참조).

위반 시 제재

▪ 키즈카페 사업자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보건법」 제33조제2항제1호 참조).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를 명하였나 키즈카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제1호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 다음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키즈카페는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의4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1항).

-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위 인증을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증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받습니다(「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4항, 별지 2호의 11서식 및 별지 제2호의12서식 참조).



<출처 :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www.eco-playground.kr)>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등록 취소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의4제2항 참조).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제23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호).

Q. 환경안심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경안심 인증을 받으려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심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37쪽 참조>

2.3. 보험 가입

2.3.1. 의무 보험가입 등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참조).

사고배상보험 가입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참조).

▪ 위에 따른 보험은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참조).

※ 관리주체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등록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즈카페 사업자가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 키즈카페 사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3. 키즈카페 운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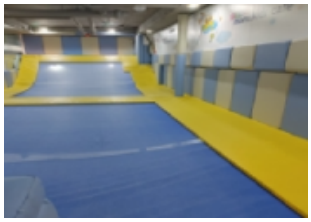
3.1. 시설확인검사 및 안전교육 실시

3.1.1. 정기 확인검사 등

테마파크 시설은 정기적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

▪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의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단서 및 별표 11 제2호나목2) 참조).

<table>
<tr><th>유형</th><th colspan="2">테마파크 시설</th></tr>
<tr><td rowspan="3">주행형</td><td colspan="2">▪ 미니기차, 배터리카 등</td></tr>
<tr><td>
미니기차</td><td>
배터리카</td></tr>
<tr><td colspan="2"></td></tr>
<tr><td rowspan="3">고정형</td><td colspan="2">▪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td></tr>
<tr><td>
회전형 라이더</td><td>
미니라이더</td></tr>
<tr><td colspan="2"></td></tr>
<tr><td rowspan="3">관람형</td><td colspan="2">▪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td></tr>
<tr><td>
영상모험관</td><td>
미니시뮬레이션</td></tr>
<tr><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놀이형</td><td colspan="2">▪ 붕붕뛰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등</td></tr>
<tr><td>
붕붕뛰틀</td><td>
미니에어 바운스</td></tr>
<tr><td colspan="2"></td></tr>
</table>

<출처: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133~134쪽 및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 매뉴얼』,
2024, 126~136쪽 참조>

위반 시 제재

▪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의2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시설검사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참조).

▪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함)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 정기 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본문 참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참조).

>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참조).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2호).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위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3.1.2. 관리주체의 안전교육 등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자의 안전교육

- 키즈카페를 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한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3 참조).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 시설 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키즈카페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해야 합니다.

> ※ 안전교육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에서

확인하세요.

-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당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 이 경우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봅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4호 참조).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Q.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9 참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
  - 수시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3.2. 소방안전관리

3.2.1. 소방시설 설치 등

키즈카페 사업자는 소방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비상구 등 설치

▪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비상구·피난통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제1호 참조).

유형	안전시설 종류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밀폐구조의 영업장인 경우만 해당함)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함)
피난설비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함)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 등 • 휴대용 비상조명 등
비상구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함]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그 밖의 안전시설	• 누전차단기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시설등을 소방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참조).

※ 소방안전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방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세요.

3.3. 안전사고 발생 대처방법

3.3.1. 안전사고 대응 조치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키즈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참조).

기구 및 시설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조치사항
테마파크 시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테마파크 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테마파크 시설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테마파크 시설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 내장(內臟)의 손상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키즈카페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참조).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6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참조).

응급상황 대비 준비사항

▪ 키즈카페 관리주체 및 키즈카페 이용 어린이의 보호자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행정안전부·대한적십자사,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2022, 2쪽)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시 행동지침

▪ 키즈카페 관리주체 및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다음의 행동지침을 알아두면 키즈카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대한적십자사,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2022, 3쪽).

1



현장안전 여부 확인

화재, 도로 위 등의 안전 여부 점검 및
주변 어린이 통제

2



(외상)환자 움직임 최소화

2차 손상 방지

3



신속한 119 신고

장소, 인원, 환자상태, 상황 등 설명

4



응급처치 시행

(응급의료전화상담원 활용)

119 도착 전까지 통화 유지

5



환자 보호자 연락

6



환자 방치 금지

119 구급대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도착 전까지 이탈 금지

4. 키즈카페 폐업하기

4.1. 키즈카페 폐업 신고

4.1.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부가가치세 완납

▪ 키즈카페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참조).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수시부과한 세액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참조).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참조).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함)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키즈카페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